

문서번호	BSKS-2-1-26
제정일자	2012.01.02.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1/6

2012.01.02.제정 2013.01.18.개정 2014.02.01.개정 2019.07.16.개정 2022.04.15.개정

소관부서 : 사무처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부산경상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가 정한 국가장학규정 제3조에 의거, 국가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장학금의 종류와 장학생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수혜 대상 소득 분위)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하며, 국가장학금 유형별 수혜대상 소득 분위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해당연도 국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의 수혜대상 소득 분위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01.18.>
 - 1. 삭제 <2013.01.18.>
 - 2. 삭제 <2013.01.18.>
 - 3. 환산소득액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기준(소득+부동산+전·월세+자동차+경제활동지수 등 포함)에 따라 산정된 재단이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다.
- 제3조(수혜 대상 성적 기준) 장학금 수혜자의 성적 및 이수학점은 한국장학재단 해당연도 국 가장학금 사업 시행계획의 성적 및 이수학점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01.18.>
 - 1. 삭제 <2013.01.18.>
 - 2. 삭제 <2013.01.18.>
 - 3. 성적적용 특이사항
 - 가. 삭제 <2013.01.18.>
 - 나. 직전학기란 한학기의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 또는 부분학기(계절학기 포 함 가능)를 말한다.<개정 2013.01.18.>
 - 다. 직전학기 성적 산출시 학생이 학점을 포기하더라도,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수학점 및 성적을 산출하여 적용한다.<개정 2013.01.18.>
 - 라.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우리대학의 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07.16.>
 - 마.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한다. 단, 성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성적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입생 성적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3.01.18.>
- 제4조(지원 범위) I, Ⅱ유형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I 유형 국가장학금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 해당연도 국가장학금사업 시행계획의 지원 대상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01.18.>



문서번호	BSKS-2-1-26
제정일자	2012.01.02.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2/6

- 2. Ⅱ유형 국가장학금 지원액
 - 가.Ⅱ유형 국가장학금 총 지원액과 수혜 대상자의 소득분위별 해당 비율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지원 기준액을 결정한다.
 - 나. 분위가 낮은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차등 지급한다.<개정 2013.01.18.>
 - 다. 당해학기 타 장학금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 지급금액은 변경될 수 있다.
- 제5조(장학생 우대 분야) ① 국가장학금을 포함한 교내·외 장학금으로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지원하며, 특정 소득분위 학생이 제외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또한 다음 분야 혹은 부문과 관련된 재학생은 우대 지원하며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1.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생
 - 2.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 또는 기혼자
 - 3. 장애인, 국가유공자, 탈북대학생, 교육기부 대상학생 등 <개정 2013.01.18>
 - 4. 미래성장동력 관련분야 전공 학생 우대
 - 가. 첨단융합 관련분야 학과
 - 1) 방송통신융합산업: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차세대 IPTV 등 나. 고부가 서비스 관련분야 학과
 - 1)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코디네이터, 병원국제마케팅 등 전문가 양성
 - 2) 글로벌 교육서비스: 한국어연수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디지털교과서 개발 등 전문가 양성
 - 3) 콘텐츠 소프트웨어: 게임, 가상현실콘텐츠, 차세대 뉴미디어 등
 - 4) MICE·융합관광: MICE 정보시스템, 의료관광 등
 - 다. 본 관련분야 전공우대 학과지정은 우대분야의 취지를 반영하여 국가장학금운영위 원회 회의에서 심의·결정한다.
 - 5. 사회공헌 및 지식봉사 활동 연계강화 : 지식봉사 참여 등을 통한 사회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 양성과 다문화 지식봉사 멘토링(예·체능 분야 포함) 및 제3세계 국가 해외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 참여 학생을 적극 지원한다.
- 제6조(서류 제출 및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신청서류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원칙적으로 재단에 제출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리 대학교로 제출한다. 단, 제출 서류의 위변조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처리한다.
 - 1.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 2.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3년
- 제7조(중복지원 여부 확인) 등록금 범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국가학자 금 대출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기본 취지에 따라 중복지원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처리한다.<개정 2013.01.18.>



문서번호	BSKS-2-1-26
제정일자	2012.01.02.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3/6

- 1. 해당학기 및 이전 학기의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장학금 심사에서 탈락한다. 단, 심사기간 내 중복지원 사유를 해소할 시 재심사 가능하도록 한다.<개정 2013.01.18.>
- 2. 삭제 <2013.01.18.>
- 3.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의 범위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개정 2013.01.18.>
- **제8조(장학금 반환 사유 및 시기)**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장학금을 반환하여 야 한다. 단, 복학 시까지 등록금을 이연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반환 사유
 - 가. 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 나. 휴학 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 2. 반환시기
 - 가.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발생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나. 중복지원으로 인한 반환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 3. 반환대상 금액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준하여 산정하며, 세부 금액 산정은 [별표2]의 기준과 같다.
- 제9조(장학생의 자격관리) 우리 대학교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도록 성적 관리를 지도하며, 학적변동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사항을 재단에 통보 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장학금과 관련하여 접수된 관계서류는 반드시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10조(일반 사항) 본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와 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훈령)의 내용에 따르며, 별도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부산경상대학교 국가장학금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교육기본법 제28조(장학제도 등)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장학사업 운영 규정(훈령)의 변경에 따라 변경의 사유를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2-1-26
제정일자	2012.01.02.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4/6

부 칙

제1조(시행일) 본교 행정조직 개편(2014.02.01.)에 의하여 본 세칙 관련 업무를 『산학처』에서 『교학처』로 이관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교 행정조직 개편(2019.05.01.)에 의하여 본 세칙 관련 업무를 『교학처』에서 『사무처』로 이관하고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2022.04.15.)에 의하여 『학생산학취업처』를 『산학처』로,『기획처』를 『기획실』로,『입학홍보처』를 『입시홍보실』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BSKS-2-1-26
제정일자	2012.01.02.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5/6

[별표1]<개정 2012.01.18.>

국가장학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 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I · Ⅱ 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 우수 국가장학금(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기관 임직원자녀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 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이중지원해당 학자금지원 및 대출기관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이중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문서번호	BSKS-2-1-26
제정일자	2012.01.02.
최종개정일자	2022.04.15.
페이지 수	6/6

[별표2]

반환대상 금액(『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6조제2항에 준하여 반환액 산정)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기준	반환 금액 산정(예)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장학금의 6분의 5 해당액	1,916,666원= ※ 2,300,000원 × 5/6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장학금의 3분의 2 해당액	1,533,333원= ※ 2,300,000원 × 2/3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장학금의 2분의 1 해당액	1,150,000원= ※ 2,300,000원 × 1/2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반환금 없음

[※] 최초 지원 받은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시 장학금 지원 횟수에 포함

[※] 중복지원의 경우 등록금 초과분 반환